

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(공시송달)공고 제2022-33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「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2. 8. 17.

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태 백 지 청 장



1. 건 명 : 수급자격(취업지원서비스/구직촉진수당) 인정 철회
2. 근 거 :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공시송달 내용
이O규	93. 03 .06	강원도 태백시 장수3길 24 24호	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서	「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 요청	1)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('22. 07. 19) 2)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('22. 08. 01) 3)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할 것. 4)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을 아니 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전 통지 내용대로 처리함.

4. 공고기간 : 2022. 8. 16. ~ 2022. 8. 31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태백고용복지+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박주영(Tel. 033-550-868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